

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 외교부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 확대’, 법무부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 등
2024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0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

*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의 등장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93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제출했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입안 부문 2건, 법령정비 부문 5건, 법령해석 부문 1건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적극행정 법제 문화가 공식 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의 원칙이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24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

연번	유형	기관	사례명
1	법령 입안	외교부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의 확대
2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식품자동판매기를 자동 판매기영업의 정의 규정에 반영
3	법령 정비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 개선
4		법무부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로 피해자 보호
5		해양수산부	조업 여건에 맞춰 어선 위치통지 제도의 합리적 개선
6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채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
7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정정 자동심사 대상 확대
8	법령 해석	경찰청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발급

※ 붙임: 2024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주요 내용 참조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최성희	(044-200-6561)
		담당자	사무관	신연주	(044-200-6565)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기 관	주요 내용
외교부	< 법령입안 -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 ■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의 확대(「여권법 시행령」 제45조 '24.1.30.) - (입안배경) 여권 명의인이 사전 동의를 해야만 여권의 발급·재발급·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입안내용) 여권 명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 등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식품 의약품 안전처	< 법령입안 - 포괄적 개념 정의 > ■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영업의 정의 규정에 반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24.5.14.) - (입안배경)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중심으로 시설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솜사탕 자판기, 밀키트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체계가 미비하였음 - (입안내용)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 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영업이 위생관리 등 관리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개정
보건복지부	< 법령정비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 개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4.6.14.) - (문제점) 2016년 제정 당시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초기로, 민간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진입방지를 위해 인력기준을 통상 환자 수로 규정하는 유사 제도와는 달리 병상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호스피스전문기관 내의 환자 수 변동에도 인력기준이 변동될 수 없는 등 탄력적 인력 운영을 저해 - (정비 내용) 환경의 변화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병상 기준 인력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

기 관	주요 내용
법무부	< 법령정비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 ▪ 신속한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로 피해자 보호(「공탁법」 제9조의2, '24.10.16.) - (문제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 - (정비 내용)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 신속하게 정부입법으로 추진 : 입법예고('24.5.) →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24.6.) → 법제심사('24.7.) → 국무회의('24.7.) → 국회 통과('24.9.) → 공포('24.10.) → 시행('25.1.)
해양수산부	< 법령정비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 ▪ 조업 여건에 맞춰 어선 위치통지 제도의 합리적 개선(「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2조, '24.10.8.) - (문제점) 각 해역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간격(특정해역 6시간, 조업자제해역 8시간, 일반해역 12시간)으로 1일(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 1회~3회(특정해역 3회, 조업자제해역 2회, 일반해역 1회) 위치통지를 하고, 그와 별도로 태풍 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특보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추가 위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음 - (정비 내용)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치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벌금을 강화함으로써 보완
환경부	< 법령정비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채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수도법 시행령」 제14조, '24.8.21.) - (문제점) 상수원보호구역 중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 휴경하였다가 농사를 재개할 때 자연적으로 나무가 우거진 부분에 대해 수시로 벌채가 필요하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경작에 불편이 있었음 - (정비 내용)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를 신고행위로 규정

기 관	주요 내용
관세청	< 법령정비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 ▪ 원산지증명서 정정 자동심사 대상 확대(「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 '24.6.19.) - (문제점)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업무시간 외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 발급기관 영업일까지 대기해야 하고, 공휴일의 경우 임시 개청을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 비용 부담 및 세관 인력 상시대기 부담이 발생 - (정비 내용)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신청한 원산지증명서 정정 건에 대해 자동심사 혜택 확대 * 입증서류 누락 등 자동심사 신청오류 방지를 위해 제출 서류를 필수 업로드 하도록 시스템 개선
경찰청	< 법령해석 - 입법공백 시 국민 편익 확대 해석 > ▪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놀봄센터'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석 - (문제점) 학교 밖 '거점형 놀봄센터'(교육부고시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해석 내용) 향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거점형 놀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 해석하여 신고증 발급